

「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」
지원사업 시행 공고

2022년 『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』 사업 시행에 대하여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4. 4.

고용노동부 장관

1

사업 개요

- ☐ (사업 내용) 저탄소·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사업주가 직무교육·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

* (추진 근거) 「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」(‘21.7.22)

- ☐ (지원 대상 사업주) 저탄소·디지털 전환 사업주*(기업규모 무관)

* 최근 3년(19년~) 이내 사업재편(산업부)·사업전환(중기부) 승인 기업,
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,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 기업 등

- ☐ (지원 내용) 직무 심화·전환 교육훈련·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
교육비 지원

* 단, 전직지원의무화가 적용된 1,000인 이상 기업의 전직지원 서비스는 제외하고,
직무심화·전환 교육훈련 비용만 지원

- (지원 금액 및 기간) 1인당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12개월
한도로 지원

- (신청 주기) 3개월 단위로 신청·지급이 원칙

* 지원금 신청 前 「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」참여 신청서 제출 및 승인 필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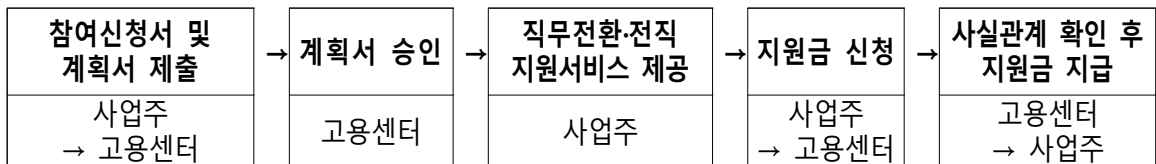
- (신청 기한) 승인 받은 사업 참여 신청서 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

* 신청 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

- (지원 요건) ① 교육 등 실시에 대한 노·사 협의 ② 최소 3개월 이상의 교육 실시

2 지급 절차 및 신청 방법

- (지급 절차) 사업주는 참여 신청 승인받고 직무 교육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



- (신청 방법) 사업주는 관련 서식을 작성(참여신청서, 지원금 지급 신청서 등)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 신청

* 관련 서식은 고용보험 누리집(www.ei.go.kr)에서 확인 가능

3 기타사항

- '22년 사업 목표인 2,300명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금년도 사업이 연도 중에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
(이 경우 별도로 추가 공고 예정)

- 자세한 사항은 '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지침' 참조

* 고용보험 누리집(www.ei.go.kr)에서 확인 가능

- 문의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☎1350)

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